관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5. 1. 9. 2014누328]



【전문】

【원고, 항소인】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2인) 【피고, 피항소인】부산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구합5818 판결

【변론종결】2014. 12. 12.

【주문】

]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별지1-9 기재 2011. 3. 29.자 각 관세 합계 585,346,930원, ② 별지1-10 기재 2011. 6. 27.자 각 관세 합계 1,141,086,510원, ③ 별지1-11 기재 2011. 9. 27.자 각 관세 합계 727,156,980원, ④ 별지1-8 기재 2011. 11. 1.자 각 관세 합계 3,443,83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별지1-5 기재 2011. 3. 29.자 각 관세 합계 585,754,340원 및 각 부가가치세 합계 205,014,020원, ② 별지1-6 기재 2011. 6. 27.자 각 관세 합계 1,141,881,390원 및 각 부가가치세 합계 399,658,540원, ③ 별지1-7 기재 2011. 9. 27.자 각 관세 합계 727,663,000원 및 각 부가가치세 합계 254,682,050원, ④ 별지1-8 기재 2011. 11. 1.자 각 관세 합계 3,443,831,630원 및 각 부가가치세 합계 1,205,341,08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가 별지1-5, 별지1-6, 별지1-7 기재 각 관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하자,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조담배 도매업, 담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 법인인 Philip Morris International Inc.(이하 'PMI'라고 하고, 그 계열회사들을 통틀어 'PMI그룹'이라고 한다)의 자회사이고, 스위스국 법인인 Philip Morris Products S.A.(이하 'PMPSA'라고 한다)는 PMI그룹 내 계열회사 중 하나이다.

나. 원고와 PMPSA 사이의 제1계약 체결

원고는 2001. 5. 31. 국내에서 필립모리스 담배 완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허여받기 위해 PMPSA와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PMPSA에게 로열 티를 지급하였는데,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계약의 주요 내용〉? 이 라이선스 계약은 2001. 5. 31. 체결되었다.

[LICENSE AGREEMENT entered into as of May 31, 2001.] ? 전문 PMPSA는 원고가 아래 조건에 따라 계열회사들을 통해 계약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본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를 바란다.

[Licensor desires that Licensee have the right to use the Trademarks(as defined herein)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right to have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by Affiliates in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accordance with the terms hereof.] ? 제1조 정의(DEFINITIONS) 1.01. 정의(Definitions) 다음 용어는 본 계약에서 사용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The following terms shall have the specified meanings when used in this Agreement:]? (b) 어느 일방의 "계열회사"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그 당사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다만,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계열회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Affiliate" of a party shall mean any person or entity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arty; provided that,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an "Affiliate" of the other.] ? (f) "계약제품"이란 품질표준과 사양서에 따라 본 계약 부록 A에서 확인되는 담배 브랜드 제품 또는 본 계약 부록 A에서 확인되는 상표로 판매되는 담배 브랜드 제품을 의미한다.

["Licensed Products" shall mean the brands of cigarettes identified in Schedule A hereto or sold under the trademarks identified in Schedule A hereto, conforming to the Quality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k) "계약 지역"이란 관세가 부과되는 대한민국 시장을 의미한다.

["Territory" shall mean the duty paid market of the Republic of Korea.]? (I) "본건 상표"란 본 계약 부록 A에 정한 브랜드에 대한 상표, 상표 등록, 상표 적용 및 그러한 상표, 상표 등록, 상표적용의 모든 재적용, 재등록, 갱신을 의미한다.

- ["Trademarks" shall mean the trademarks and any trademark registrations and trademark applications for the brands set forth in Schedule A as well as all reapplications, reregistrations, and renewals of any of the foregoing.] ? 제2조 라이선스 허여(LICENSE GRANT) 2.01. 허여되는 권리(Rights Granted) (a) PMPSA는 원고에게 본 계약의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계약지역에서 판매와 소비를 위한 계약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본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허여한다.
-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upon the terms and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of this Agreement, the non-exclusive right to use the Trademarks upon and in connection with the manufacture of the Licensed Products for sale and consumption in the Territory.]? (b) PMPSA는 원고가 현재 대한민국 내에 제조설 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설비를 건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그 설비가 적어도 1년 동안 가동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따라서 그 설비가 완전 가동될 동안, 본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PMPSA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열회사들("계열 제조회사들")을 통해 계약지역 밖에서 계약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다; 단, 그 계열 제조회사 각각은 PMPS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그 계열 제조회사가 제조한 모든 계약제품에 대하여 본 계약 조건에 따라 PMPSA에게 항상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 [Licensor recognizes that Licensee does not currently have manufacturing facilities in Korea and is intending to construct such facilities and that such facilities will not be operational for at least one year. Accordingly, pending such facilities being fully operational, but not for a period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hereof,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the right to have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outside the Territory by Licensee's Affiliates("Affiliated Manufacturers"); provided, that each such Affiliated Manufacturer shall have been approved in advance by Licensor; and provided, further, that Licensee shall at all times remain directly liable to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Licensor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for all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by any such Affiliated Manufacturer.]? 제4조 로열티, 세금(ROYALTIES, TAXES) 4.01. 로열티 금액(Royalty Amount) (a) 본 계약에 따라 본 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허여하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고려하여, 원고는 PMPSA에게 본 계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원고의 계약제품 순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 [In consideration of the right and license granted to Licensee to use the Trademarks pursuant to this Agreement,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in the manner and as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royalty of 5% of Licensee's Net Sales of the Licensed Products.] ? 제5조 유효일, 기간, 해지(EFFECTIVE DATE, TERM, TERMINATION) 5.01. 유효일, 기간(Effective Date; Term) 본 계약은 2001. 3. 28. 또는 그 이후 대한민국 항구에서 양륙되는 계약제품에 적용되고 유효하며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2006. 3. 31.까지 계속 유효하다.
- [This Agreement shall apply and be effective to Licensed Products unloaded at a Korean port on or after March 28, 2001, and, unless earlier termin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effect through March 31, 2006.]

 L.
- 당초 원고는 담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2002. 10. 14.경 ○○시에 담배 제조 공장을 완공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 당시 원고는 자체적으로 각초(刻草, cut filler, 농가에서 수확한 담배잎을 건조, 배합, 가향, 열처리, 숙성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다음 이를 일정한 크기로 절각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 담배 완제품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조 공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각초를 전량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였다(이후 원고는 2012. 6.경 각초 제조 공정을 갖추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각초를 제조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 라. 서울세관장의 2003. 6. 30.자 조사결과 통지
- 서울세관장은 원고의 수출입통관 등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2003. 6. 30. 원고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지(이하 '서울세 관장의 조사결과 통지'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울세관장의 2003. 6. 30.자 조사결과 통지의 주요 내용〉?1. 조사대상기간 : 1997. 11. 1. ~ 2002. 11. 1.2. 경정할 내역 (단위 : 원)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합계2,005,432,7002,541,693,490909,425,2305,456,551,420□ 붙임1.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금액 : 천원)위반유형과세가격 누락추징세액관련물품과세가격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침거래가격에 적정이윤 미반영23,430,6125,456,551수입 담배합계?5,456,5512.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1) 거래가격에 적정이윤 미반영 원고는 수출자인 PMPSA와 PMG에서 담배 제품을 수입하면서, PMPSA와는 제조업자인 PMUSA의 Cost, Mark-up on Cost 5%, 선적비용 등과 상기 합계액의 PMPSA의 Mark-up 2%를 합한 금액으로 수입하고 있고, PMG와는 Cost + Mark-up on Cost 5% 금액으로 수입하고 있어 이른바 Cost Plus Mark-up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PMUSA 및 PMG의 Mark-up 5%는 회사 전체의 이익률 및 동종 동류의 상품 판매에서 실현하는 전반적인 이익률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고, Mark-up on Cost 5%를 산출한 PwC의 방법 역시 WTO 평가협약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적정한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가 PMPSA 및 PMG에서 수입하는 담배 완제품에 대하여는 증가비용 중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상표권 대가를 공제한 실질적인 증가비용을 수입가격에 가산하고자 함 각초 제품에 대하여는 기업심사 중 입수한 자료상의 제조원가 명세에서 각초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브랜드가 일치하는 완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안분하여 각초 수입가격과 비교한 결과, 비교가격 대비 3%에 상당하는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각초 제품에 대하여는 수입가격의 3%를 가산하고자 함 2) 상표권 사용료 감액 경정 〇 원고는 PMPSA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2001. 5. 31.)하고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에 따른 상표사용 권리 허여와 한국 내 제조시설의 완전 운영전까지 라이선스 제품을 국외에서 제조할 권리를 허여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5%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미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가산신고하고 있는바, - 가산요소는 협약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동 건과 같은 협약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일 경우 동 가산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 경정 조치할 예정임 3) 추가 가산신고 조치 ○ 동건 경정 조치와 별도로 원고가 2003. 4. 1. 이후 현재까지 수입한 완제품 및 각초 제품에 대하여는 동 결과 통지내역에 따라 추가 가산신고하시기 바람

- 마. 원고와 PMPSA 사이의 제2계약 체결
- 원고는 2004. 1. 1.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기 위해 PMPSA와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 (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PMPSA에게 로열티(이하 원고가 제2계약에 따라 PMPSA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이 사건 권리사용료'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제2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계약의 주요 내용〉? 본 계약은 2004. 1. 1. 체결되었다 [This Agreement, effective as of January 1, 2004.] ? 전문 가. PMPSA는 계약지역 내에서 본건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
 - 나. 본 계약 조건에 따라, PMPSA는 원고에게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을 허여하고자 하며, 원고는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한다.
- [A. PMPSA owns the Trademarks in the Territory(each, as defined below); and B. PMPSA wishes to license the Trademarks and certain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Licensee, and Licensee wishes to use the Tradema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of.] ? 1. 정의(Definitions) 1.5. "기타 지적재산권"이란 PMPSA가 본 계약 기간 동안 언제든지 사용권을 허여할 권리를 보유하고, 계약지역 및/또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제품 제조국의 법령, 법률 또는 형평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계약제품과 관련된 본건 상표 이외의 산업 및 지적 재산권을 의미하며,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작업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존재하거나 향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에 관한 권리(특히 및 특허출원이 포함됨),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등록 여부를 불문함)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1.5.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eans any industrial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ther than the Trademarks, applicable to the Products, as to which PMPSA has at any tim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the right to grant licenses and which are protected by statute, at law or in equity in the Territory and/or in the country of manufacture of the Products pursuant to the Agreement, if this shall be other than the Territory, including all registered and unregistered copyright and similar rights which may subsist or may hereafter subsist in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rights in relation to inventions(including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rights in relation to know-how,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trade secrets, and rights in relation to designs(whether registerable or not registerable)]. ? 1.6. "계약제품"이란 본 계약에 따라 제조되고 본건 상표가 부 착된 모든 담배를 의미한다.

- [1.6. "Products" means all cigarettes, bearing the Trademarks and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 1.7. "사양서"란 PMPSA가 수시로 통지하는 계약제품의 제조를 위한 PMPSA의 표준, 사양 및 지시를 의미한다.
- [1.7. "Specifications" means the standards, specifications and directions of PMPSA for the manufacture of the Products as communicated from time to time by PMPSA.] ? 1.8. "계약지역"이란 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는 대한 민국 국내시장을 의미한다.
- [1.8. "Territory" means the duty paid and excise tax paid domestic market of the Republic of Korea.] ? 1.9. "본건 상표"란 본 계약 부록 A(별지2 기재와 같다)에 열거된 상표(본 계약에 따라 수시로 수정되는 내용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 [1.9. "Trademarks" means the trademarks listed in Schedule A hereto,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 2. 라이선스 허여(License Grant) PMPSA는 원고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계약제품 제조와 계약지역에서의 계약제품 판매를 위하여 본건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인 권리를 허여한다.
- [PMPSA hereby grants to License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the non-exclusive right to use the Trademarks and the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manufacture of the Produc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ale of the Products in the Territory.] ? 4.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원고는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며,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는 계약제품은 판매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제품의 견본을 PMPSA 또는 PMPSA가 지명한 자에게 제출한다.

PMPSA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언제든지 적법하게 수권된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에 의해 또는 원고의 계산으로 계약 제품이 제조 또는 보관되거나 또는 제조시 사용될 재료가 보관된 장소를 검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리인은 그러한 장소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계약제품 또는 재료를 검사하고 시험하며 원고의 관련 장부와 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PMPSA는 계약제품이 사양서의 모든 점에 부합되게 생산되도록 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료나 제조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진다.

원고가 광고, 판촉, 판매 또는 관련 재료에 본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절차(수시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PMPSA 또는 그 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Licensee shall manufacture the Products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and shall not sell any Products which are not so manufactured. Licensee shall submit to PMPSA of its designees each calendar quarter fair samples of all Products that have been manufactured and sold by it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quarter. PMPSA shall at all time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be entitled to inspect, by its duly authorized agents, any premises where the Products are manufactured or stored, or where materials to be used in their manufacture are stored, by Licensee or for its account, and said agents shall have free access to all parts of said premises and may inspect and test the Products or such materials and make copies of the related books and records of Licensee. PMPSA shall have an unqualified right to require such changes in materials or methods of manufacture as may reasonably be necessary to secure the production of Products complying in all respects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with the Specifications. Any use of the Trademarks by Licensee in advertising, promotional, sales, or related materials shall be subject to the prior approval of PMPSA or its representatives under existing procedures, as may be modified from time to time.]? 5. 로열티(Royalties) 5.1.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각 계약제품에 대하여 PMPSA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제품 각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는 원고의 해당 브랜드 순매출액 중 본 계약 부록 A에 기재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1. In consideration of the rights granted herein, Licensee shall pay to PMPSA a royalty for each of the Products which Licensee manufactures and sells pursuant to this Agreement. For each brand of the Products, such royalty shall be that percentage of Licensee's Net Sales Value for that brand which is specified in Schedule A.] ? 7. 기술 지원 및 개량물(Technical Assistance and Improvements) PMPSA는 PMPSA가 판단하기에 원고가 사양서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원고는 그러한 기술지원 제공과 관련된 합리적인 출장비와 생활비를 부담한다.

원고는 원고나 그 직원이 만든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개량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무상으로 PMPSA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해당 개량물은 PMPSA의 단독 재산이 된다.

- [PMPSA shall supply such technological assistance as PMPSA deems necessary or appropriate to enable Licensee to manufacture and sell the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Licensee shall assume the cost of reasonable travel and living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such assistance. Licensee shall promptly communicate to PMPSA without charge any improvements relating to the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de by it or its employees, and once communicated such improvements shall become the sole property of PMPSA.] ? 9. 기간 및 해지(Term and Termination) 9.1. 본 계약은 2004. 1. 1.에 발효되며,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해지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 [9.1.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as of January 1, 2004 and shall continue indefinitely until terminated by ei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Section 9.2.]
- 바. 원고는 2006. 4. 6.부터 2007. 12. 28.까지 총 397회에 걸쳐 PMI그룹 내 PMPSA, Philip Morris Limited, Philip Morris Philippines Manufacturing Inc.(이하 통틀어 '이 사건 판매자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각초를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였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각초를 '이 사건 각초'라고 한다).
- 사. 피고의 2008. 3. 13.자 이 사건 기업심사결과 통지
- 1) 피고는 수출입물품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2008. 3.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그 심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기업심사결과 통지'라고 한다)하면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수입신고별 세부추징내역' 등을 첨부하였고, '원고가 지급하는 이 사건 권리사용료, 이 사건 권리사용료와 이전가격의 관계에 대하여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였다.
- < 피고의 2008. 3. 13.자 이 사건 기업심사결과 통지의 주요 내용〉?① 심사대상기간: 2003. 1. 1. ~ 2007. 12. 31.② 경정할 내역(단위: 원)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합계539,101,830669,453,740225,954,8901,434,510,460?□ 붙임: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1) 디자인 개발비용 및 인쇄판 제작비용 신고누락 2) 가산금액 누락 일부 각초 수입건의 가산금액을 신고에서 누락(서울세관 심사 결과 각초에 대해서는 mark-up 8%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일부건에 대해 가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산금액 미신고) 3) AOC 비용 ○ AOC(말레이시아 소재 아시아제조본부)가 원고에게 기술지원비로 청구하는 비용 중담배잎 구매, 선별 등과 관련된 비용은 국내로 수입되는 각초를 수출하는 자의 제조원가로 계상되었어야 할 비용으로 각초 수입신고 가격에 가산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 ○ 적용규정 : 적출내역 2), 3) 관련 관세법 제35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관세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의 신축적용 유지) ⇒ 기존 서울세관 심사결과 인정된 mark-up 비율에 대한 가산비율 유지 및 종전 심사 후 신설 비용인 AOC 비용 중 담배잎 관련비용에 대한 추가 가산총 예상 추징세액 : 65건 1,434,510,460원

- 2) 이후 원고는 위 적출내역 중 '가산금액 누락' 부분에 관해서만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수정신고하지 않은 '디자인 개발비용 및 인쇄판 제작비용 신고누락' 및 'AOC 비용 누락' 부분에 관하여 2008. 4. 17. 원고에게 '세액경정통지 및 납부고지서 송부' 공문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 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 1)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초 및 이 사건 권리사용료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원고가 이 사건 판매자들로부터 수입하는 이 사건 각초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세가격 결정 고시'라고 한다) 제3-4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 담배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이 사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이 사건 각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각초의 가격 중 조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산율로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2006년도 가산율을 21.44%, 2007년도 가산율을 21.97%로 산정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초의 가격에 안분가산함에 따라 증액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피고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① 피고는 2011. 3. 29. 이 사건 각초 중 원고가 2006. 4. 6.부터 2006. 6. 28.까지 수입신고한 총 46건의 각초에 관하여 별지1-1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등 합계 948.921,660원을 부과하였다.
- ② 피고는 2011. 6. 27. 이 사건 각초 중 원고가 2006. 7. 3.부터 2006. 9. 29.까지 수입신고한 총 74건의 각초에 관하여 별지1-2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등 합계 1,849,847,300원을 부과하였다.
- ③ 피고는 2011. 9. 27. 이 사건 각초 중 원고가 2006. 10. 9.부터 2006. 12. 28.까지 수입신고한 총 32건의 각초에 관하여 별지1-3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등 합계 1,178,813,770원을 부과하였다.
- ④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각초 중 원고가 2007. 1. 3.부터 2007. 12. 28.까지 수입신고한 총 246건의 각초에 관하여 별지1-4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등 합계 6,013,858,720원을 부과하였다.
-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29. 및 2011. 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9. 20. 피고의 당초 처분 중 관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그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이에 따라 피고의 당초 처분은 별지1-5 내지 별지1-8 기재와 같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되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3)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2. 8. 2006년도 가산율을 21.44%에서 21.43%로 정정한 후 ① 별지1-5 기재 2011. 3. 29.자 각 관세 합계 585,754,340원을 별지1-9 기재 2011. 3. 29.자 각 관세 합계 585,346,930원으로, ② 별지1-6 기재 2011. 6. 27.자 각 관세 합계 1,141,881,390원을 별지1-10 기재 2011. 6. 27.자 각 관세 합계 1,141,086,510원으로, ③ 별지1-7 기재 2011. 9. 27.자 각 관세 합계 727,663,000원을 별지1-11 기재 2011. 9. 27.자 각 관세 합계 727,156,9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을 통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인 ① 별지1-9 기재 2011. 3. 29.자 각 관세 합계 585,346,930원, ② 별지1-10 기재 2011. 6. 27.자 각 관세 합계 1,141,086,510원, ③ 별지1-11 기재 2011. 9. 27.자 각 관세 합계 727,156,980원, ④ 별지1-8 기재 2011. 11. 1.자 각 관세 합계 3,443,83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조담배 도매업, 담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 법인인 Philip Morris International Inc.(이하 'PMI'라고 하고, 그 계열회사들을 통틀어 'PMI그룹'이라고 한다)의 자회사이고, 스위스국 법인인 Philip Morris Products S.A.(이하 'PMPSA'라고 한다)는 PMI그룹 내 계열회사 중 하나이다.

나. 원고와 PMPSA 사이의 제1계약 체결

원고는 2001. 5. 31. 국내에서 필립모리스 담배 완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허여받기 위해 PMPSA와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PMPSA에게 로열 티를 지급하였는데,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계약의 주요 내용〉? 이 라이선스 계약은 2001. 5. 31. 체결되었다.

- [LICENSE AGREEMENT entered into as of May 31, 2001.] ? 전문 PMPSA는 원고가 아래 조건에 따라 계열회사들을 통해 계약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본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를 바란다.
- [Licensor desires that Licensee have the right to use the Trademarks(as defined herein)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right to have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by Affiliate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hereof.] ? 제1조 정의(DEFINITIONS) 1.01. 정의(Definitions) 다음 용어는 본 계약에서 사용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The following terms shall have the specified meanings when used in this Agreement:]? (b) 어느 일방의 "계열회사"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그 당사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다만,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계열회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Affiliate" of a party shall mean any person or entity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arty; provided that,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an "Affiliate" of the other.] ? (f) "계약제품"이란 품질표준과 사양서에 따라 본 계약 부록 A에서 확인되는 담배 브랜드 제품 또는 본 계약 부록 A에서 확인되는 상표로 판매되는 담배 브랜드 제품을 의미한다.

["Licensed Products" shall mean the brands of cigarettes identified in Schedule A hereto or sold under the trademarks identified in Schedule A hereto, conforming to the Quality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k) "계약 지역"이란 관세가 부과되는 대한민국 시장을 의미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Territory" shall mean the duty paid market of the Republic of Korea.]? (I) "본건 상표"란 본 계약 부록 A에 정한 브랜드에 대한 상표, 상표 등록, 상표 적용 및 그러한 상표, 상표 등록, 상표적용의 모든 재적용, 재등록, 갱신을 의미한다.

- ["Trademarks" shall mean the trademarks and any trademark registrations and trademark applications for the brands set forth in Schedule A as well as all reapplications, reregistrations, and renewals of any of the foregoing.] ? 제2조 라이선스 허여(LICENSE GRANT) 2.01. 허여되는 권리(Rights Granted) (a) PMPSA는 원고에게 본 계약의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계약지역에서 판매와 소비를 위한 계약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본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허여한다.
-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upon the terms and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of this Agreement, the non-exclusive right to use the Trademarks upon and in connection with the manufacture of the Licensed Products for sale and consumption in the Territory.]? (b) PMPSA는 원고가 현재 대한민국 내에 제조설 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설비를 건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그 설비가 적어도 1년 동안 가동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따라서 그 설비가 완전 가동될 동안, 본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PMPSA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열회사들("계열 제조회사들")을 통해 계약지역 밖에서 계약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다; 단, 그 계열 제조회사 각각은 PMPS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그 계열 제조회사가 제조한 모든 계약제품에 대하여 본 계약 조건에 따라 PMPSA에게 항상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 [Licensor recognizes that Licensee does not currently have manufacturing facilities in Korea and is intending to construct such facilities and that such facilities will not be operational for at least one year. Accordingly, pending such facilities being fully operational, but not for a period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hereof,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the right to have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outside the Territory by Licensee's Affiliates("Affiliated Manufacturers"); provided, that each such Affiliated Manufacturer shall have been approved in advance by Licensor; and provided, further, that Licensee shall at all times remain directly liable to Licensor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for all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by any such Affiliated Manufacturer.]? 제4조 로열티, 세금(ROYALTIES, TAXES) 4.01. 로열티 금액(Royalty Amount) (a) 본 계약에 따라 본 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허여하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고려하여, 원고는 PMPSA에게 본 계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원고의 계약제품 순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 [In consideration of the right and license granted to Licensee to use the Trademarks pursuant to this Agreement,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in the manner and as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royalty of 5% of Licensee's Net Sales of the Licensed Products.] ? 제5조 유효일, 기간, 해지(EFFECTIVE DATE, TERM, TERMINATION) 5.01. 유효일, 기간(Effective Date; Term) 본 계약은 2001. 3. 28. 또는 그 이후 대한민국 항구에서 양륙되는 계약제품에 적용되고 유효하며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2006. 3. 31.까지 계속 유효하다.
- [This Agreement shall apply and be effective to Licensed Products unloaded at a Korean port on or after March 28, 2001, and, unless earlier termin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effect through March 31, 2006.]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 당초 원고는 담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2002. 10. 14.경 ○○시에 담배 제조 공장을 완공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 당시 원고는 자체적으로 각초(刻草, cut filler, 농가에서 수확한 담배잎을 건조, 배합, 가향, 열처리, 숙성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다음 이를 일정한 크기로 절각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 담배 완제품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조 공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각초를 전량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였다(이후 원고는 2012. 6.경 각초 제조 공정을 갖추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각초를 제조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 라. 서울세관장의 2003. 6. 30.자 조사결과 통지
- 서울세관장은 원고의 수출입통관 등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2003. 6. 30. 원고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지(이하 '서울세 관장의 조사결과 통지'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울세관장의 2003. 6. 30.자 조사결과 통지의 주요 내용〉?1. 조사대상기간 : 1997. 11. 1. ~ 2002. 11. 1.2. 경정할 내역 (단위: 원)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합계2,005,432,7002,541,693,490909,425,2305,456,551,420□ 붙임1.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금액: 천원)위반유형과세가격 누락추징세액관련물품과세가격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침거래가격에 적정이윤 미반영23,430,6125,456,551수입 담배합계?5,456,5512.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1) 거래가격 에 적정이윤 미반영 ○ 원고는 수출자인 PMPSA와 PMG에서 담배 제품을 수입하면서, ○ PMPSA와는 제조업자인 PMUSA의 Cost, Mark-up on Cost 5%, 선적비용 등과 상기 합계액의 PMPSA의 Mark-up 2%를 합한 금액으로 수입 하고 있고, PMG와는 Cost + Mark-up on Cost 5% 금액으로 수입하고 있어 이른바 Cost Plus Mark-up 방식으로 가 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 PMUSA 및 PMG의 Mark-up 5%는 회사 전체의 이익률 및 동종 동류의 상품 판매에서 실 현하는 전반적인 이익률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고, ○ Mark-up on Cost 5%를 산출한 PwC의 방법 역시 WTO 평가협약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적정한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수입 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가 PMPSA 및 PMG에서 수입하는 담 배 완제품에 대하여는 증가비용 중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상표권 대가를 공제한 실질적인 증가비용을 수입가격에 가산하고자 함 ○ 각초 제품에 대하여는 기업심사 중 입수한 자료상의 제조원가 명세에서 각초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브랜드가 일치하는 완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안분하여 각초 수입가격과 비교한 결과, 비교가격 대비 3%에 상당하는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각초 제품에 대하여는 수입가격의 3%를 가산하고자 함 2) 상표권 사용료 감액 경정 ○ 원고는 PMPSA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2001. 5. 31.)하고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에 따른 상 표사용 권리 허여와 한국 내 제조시설의 완전 운영전까지 라이선스 제품을 국외에서 제조할 권리를 허여하는 대가 로 매출액의 5%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미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가산 신고하고 있는바. - 가산요소는 협약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동 건과 같은 협약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일 경우 동 가산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 오납 경정 조치할 예정임 3) 추가 가산신고 조치 ○ 동건 경정 조치와 별도로 원고가 2003. 4. 1. 이후 현재까지 수입 한 완제품 및 각초 제품에 대하여는 동 결과 통지내역에 따라 추가 가산신고하시기 바람
- 마. 원고와 PMPSA 사이의 제2계약 체결
- 원고는 2004. 1. 1.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기 위해 PMPSA와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 (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PMPSA에게 로열티(이하 원고가 제2계약에 따라 PMPSA에게 지

- 급한 로열티를 '이 사건 권리사용료'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제2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계약의 주요 내용〉? 본 계약은 2004. 1. 1. 체결되었다 [This Agreement, effective as of January 1, 2004.] ? 전문 가. PMPSA는 계약지역 내에서 본건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
 - 나. 본 계약 조건에 따라, PMPSA는 원고에게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을 허여하고자 하며, 원고는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한다.
- [A. PMPSA owns the Trademarks in the Territory(each, as defined below); and B. PMPSA wishes to license the Trademarks and certain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Licensee, and Licensee wishes to use the Tradema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of.] ? 1. 정의(Definitions) 1.5. "기타 지적재산권"이란 PMPSA가 본 계약 기간 동안 언제든지 사용권을 허여할 권리를 보유하고, 계약지역 및/또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제품 제조국의 법령, 법률 또는 형평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계약제품과 관련된 본건 상표 이외의 산업 및 지적 재산권을 의미하며,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작업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존재하거나 향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에 관한 권리(특히 및 특허출원이 포함됨),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등록 여부를 불문함)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1.5.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eans any industrial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ther than the Trademarks, applicable to the Products, as to which PMPSA has at any tim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the right to grant licenses and which are protected by statute, at law or in equity in the Territory and/or in the country of manufacture of the Products pursuant to the Agreement, if this shall be other than the Territory, including all registered and unregistered copyright and similar rights which may subsist or may hereafter subsist in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rights in relation to inventions(including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rights in relation to know-how,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trade secrets, and rights in relation to designs(whether registerable or not registerable)]. ? 1.6. "계약제품"이란 본 계약에 따라 제조되고 본건 상표가 부 착된 모든 담배를 의미한다.
- [1.6. "Products" means all cigarettes, bearing the Trademarks and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 1.7. "사양서"란 PMPSA가 수시로 통지하는 계약제품의 제조를 위한 PMPSA의 표준, 사양 및 지시를 의미한다.
- [1.7. "Specifications" means the standards, specifications and directions of PMPSA for the manufacture of the Products as communicated from time to time by PMPSA.] ? 1.8. "계약지역"이란 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는 대한 민국 국내시장을 의미한다.
- [1.8. "Territory" means the duty paid and excise tax paid domestic market of the Republic of Korea.] ? 1.9. "본건 상표"란 본 계약 부록 A(별지2 기재와 같다)에 열거된 상표(본 계약에 따라 수시로 수정되는 내용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 [1.9. "Trademarks" means the trademarks listed in Schedule A hereto,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 2. 라이선스 허여(License Grant) PMPSA는 원고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계약제품 제조와 계약지역에서의 계약제품 판매를 위하여 본건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인 권리를 허여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PMPSA hereby grants to License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the non-exclusive right to use the Trademarks and the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manufacture of the Produc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ale of the Products in the Territory.] ? 4.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원고는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며,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는 계약제품은 판매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제품의 견본을 PMPSA 또는 PMPSA가 지명한 자에게 제출한다.

PMPSA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언제든지 적법하게 수권된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에 의해 또는 원고의 계산으로 계약 제품이 제조 또는 보관되거나 또는 제조시 사용될 재료가 보관된 장소를 검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리인은 그러한 장소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계약제품 또는 재료를 검사하고 시험하며 원고의 관련 장부와 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PMPSA는 계약제품이 사양서의 모든 점에 부합되게 생산되도록 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료나 제조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진다.

원고가 광고, 판촉, 판매 또는 관련 재료에 본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절차(수시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PMPSA 또는 그 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Licensee shall manufacture the Products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and shall not sell any Products which are not so manufactured. Licensee shall submit to PMPSA of its designees each calendar quarter fair samples of all Products that have been manufactured and sold by it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quarter. PMPSA shall at all time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be entitled to inspect, by its duly authorized agents, any premises where the Products are manufactured or stored, or where materials to be used in their manufacture are stored, by Licensee or for its account, and said agents shall have free access to all parts of said premises and may inspect and test the Products or such materials and make copies of the related books and records of Licensee. PMPSA shall have an unqualified right to require such changes in materials or methods of manufacture as may reasonably be necessary to secure the production of Products complying in all respects with the Specifications. Any use of the Trademarks by Licensee in advertising, promotional, sales, or related materials shall be subject to the prior approval of PMPSA or its representatives under existing procedures, as may be modified from time to time.]? 5. 로열티(Royalties) 5.1.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각 계약제품에 대하여 PMPSA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제품 각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는 원고의 해당 브랜드 순매출액 중 본 계약 부록 A에 기재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1. In consideration of the rights granted herein, Licensee shall pay to PMPSA a royalty for each of the Products which Licensee manufactures and sells pursuant to this Agreement. For each brand of the Products, such royalty shall be that percentage of Licensee's Net Sales Value for that brand which is specified in Schedule A.] ? 7. 기술 지원 및 개량물(Technical Assistance and Improvements) PMPSA는 PMPSA가 판단하기에 원고가 사양서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고는 그러한 기술지원 제공과 관련된 합리적인 출장비와 생활비를 부담한다.

원고는 원고나 그 직원이 만든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개량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무상으로 PMPSA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해당 개량물은 PMPSA의 단독 재산이 된다.

- [PMPSA shall supply such technological assistance as PMPSA deems necessary or appropriate to enable Licensee to manufacture and sell the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Licensee shall assume the cost of reasonable travel and living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such assistance. Licensee shall promptly communicate to PMPSA without charge any improvements relating to the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de by it or its employees, and once communicated such improvements shall become the sole property of PMPSA.] ? 9. 기간 및 해지(Term and Termination) 9.1. 본 계약은 2004. 1. 1.에 발효되며,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해지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 [9.1.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as of January 1, 2004 and shall continue indefinitely until terminated by ei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Section 9.2.]
- 바. 원고는 2006. 4. 6.부터 2007. 12. 28.까지 총 397회에 걸쳐 PMI그룹 내 PMPSA, Philip Morris Limited, Philip Morris Philippines Manufacturing Inc.(이하 통틀어 '이 사건 판매자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각초를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였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각초를 '이 사건 각초'라고 한다).
- 사. 피고의 2008. 3. 13.자 이 사건 기업심사결과 통지
- 1) 피고는 수출입물품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2008. 3.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그 심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기업심사결과 통지'라고 한다)하면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수입신고별 세부추징내역' 등을 첨부하였고, '원고가 지급하는 이 사건 권리사용료, 이 사건 권리사용료와 이전가격의 관계에 대하여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였다.
- 〈피고의 2008. 3. 13.자 이 사건 기업심사결과 통지의 주요 내용〉?① 심사대상기간 : 2003. 1. 1. ~ 2007. 12. 31.② 경정할 내역(단위 : 원)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합계539,101,830669,453,740225,954,8901,434,510,460?□ 붙임 :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1) 디자인 개발비용 및 인쇄판 제작비용 신고누락 2) 가산금액 누락 일부 각초 수입건의 가산금액을 신고에서 누락(서울세관 심사 결과 각초에 대해서는 mark-up 8%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일부건에 대해 가산금액 미신고) 3) AOC 비용 AOC(말레이시아 소재 아시아제조본부)가 원고에게 기술지원비로 청구하는 비용 중담배잎 구매, 선별 등과 관련된 비용은 국내로 수입되는 각초를 수출하는 자의 제조원가로 계상되었어야 할 비용으로 각초 수입신고 가격에 가산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적용규정 : 적출내역 2), 3) 관련 관세법 제35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관세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의 신축적용 유지) ⇒ 기존 서울세관 심사결과 인정된 mark-up 비율에 대한 가산비율 유지 및 종전 심사 후 신설 비용인 AOC 비용 중 담배잎 관련비용에 대한 추가 가산총 예상 추징세액 : 65건 1,434,510,460원
- 2) 이후 원고는 위 적출내역 중 '가산금액 누락' 부분에 관해서만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수정신고하지 않은 '디자인 개발비용 및 인쇄판 제작비용 신고누락' 및 'AOC 비용 누락' 부분에 관하여 2008. 4. 17. 원고에게 '세액경정통지 및 납부고지서 송부' 공문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 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 1)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초 및 이 사건 권리사용료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원고가 이 사건 판매자들로부터 수입하는 이 사건 각초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세가격 결정 고시'라고 한다) 제3-4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 담배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이 사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이 사건 각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각초의 가격 중 조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산율로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2006년도 가산율을 21.44%, 2007년도 가산율을 21.97%로 산정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초의 가격에 안분가산함에 따라 증액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피고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① 피고는 2011. 3. 29. 이 사건 각초 중 원고가 2006. 4. 6.부터 2006. 6. 28.까지 수입신고한 총 46건의 각초에 관하여 별지1-1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등 합계 948,921,660원을 부과하였다.
- ② 피고는 2011. 6. 27. 이 사건 각초 중 원고가 2006. 7. 3.부터 2006. 9. 29.까지 수입신고한 총 74건의 각초에 관하여 별지1-2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등 합계 1,849,847,300원을 부과하였다.
- ③ 피고는 2011. 9. 27. 이 사건 각초 중 원고가 2006. 10. 9.부터 2006. 12. 28.까지 수입신고한 총 32건의 각초에 관하여 별지1-3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등 합계 1,178,813,770원을 부과하였다.
- ④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각초 중 원고가 2007. 1. 3.부터 2007. 12. 28.까지 수입신고한 총 246건의 각초에 관하여 별지1-4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등 합계 6,013,858,720원을 부과하였다.
-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29. 및 2011. 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9. 20. 피고의 당초 처분 중 관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그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이에 따라 피고의 당초 처분은 별지1-5 내지 별지1-8 기재와 같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되었다.
- 3)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2. 8. 2006년도 가산율을 21.44%에서 21.43%로 정정한 후 ① 별지1-5 기재 2011. 3. 29.자 각 관세 합계 585,754,340원을 별지1-9 기재 2011. 3. 29.자 각 관세 합계 585,346,930원으로, ② 별지1-6 기재 2011. 6. 27.자 각 관세 합계 1,141,881,390원을 별지1-10 기재 2011. 6. 27.자 각 관세 합계 1,141,086,510원으로, ③ 별지1-7 기재 2011. 9. 27.자 각 관세 합계 727,663,000원을 별지1-11 기재 2011. 9. 27.자 각 관세 합계 727,156,9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을 통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인 ① 별지1-9 기재 2011. 3. 29.자 각 관세 합계 585,346,930원, ② 별지1-10 기재 2011. 6. 27.자 각 관세 합계 1,141,086,510원, ③ 별지1-11 기재 2011. 9. 27.자 각 관세 합계 727,156,980원, ④ 별지1-8 기재 2011. 11. 1.자 각 관세 합계 3,443,83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